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05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및 지원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7. 7.

다. 회 부 일 : 2025. 7.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유통·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3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및 지원(안 제31조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한류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하여 K-컬처 복합거점지구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31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

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콘텐츠 창작 및 제작 활동이
활발하고 관련 인프라 조성이
용이할 것

2. 지역 대학, 기업 등과의 연
계 협력이 가능할 것

3.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화 가
능성이 높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K-
컬처거점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콘텐츠 창작자 및 플랫폼 스
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창업지
원 및 디지털 장비·인력 활
용 지원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7
조의2에 따른 통합기반시설
구축 지원

3. 지역 대학·기업 연계를 통
한 창작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해외 진출 연계 글로벌 로컬
K-컬처 클러스터 조성 지원

	<u>③ 그 밖에 K-컬처거점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기본법으로, 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업과 제작 지원,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을 비롯한 문화관련 법에서 문화산업 및 콘텐츠 산업의 진흥 지원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복합거점지구’를 통해 콘텐츠 창작·유통·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개정안의 ‘K-컬처’는 현행법의 ‘문화산업’¹⁾과 유사하거나 하위개념인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의 ‘K-복합문화지구’는 현행법의 ‘문화산업진흥지구’²⁾와 중복되므로 현행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과 조성 지원³⁾ 규정을 통해서 지정 및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

-
-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시·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⑥삭제

안에 대하여 신중검토 의견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376

- ⑦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③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 4)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6월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는 콘텐츠 기업-교육-기관 등이 집적된 콘텐츠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콘텐츠의 제작과 생산, 기술·연구 등 산업의 측면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자금형 콘텐츠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연장 및 가상·증강현실 체험관 등 제작·향유 중심의 K-콘텐츠 통합 기반시설과 그 목적이 다르며, 또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는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대상지를 1곳을 선정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다수 지역에 구축(지정)할 수 있는 K-콘텐츠 통합 기반시설과 성격이 다르함.

참고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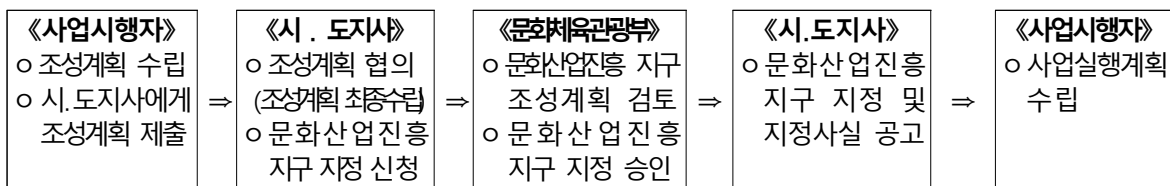
문화산업진흥지구 개요

□ 문화산업진흥지구 의의

- 문화산업 관련 기관·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 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9호)

□ 지정 절차

-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 2)



□ 지정 혜택

- (부담금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
- (인허가 의제)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의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혜택 규정 준용,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우선지원 등

□ 지정 현황 총 11개

지역	중점 산업	위 치	면 적(m²)
부산	영상, 게임	해운대구 우동(센텀시티 일원)	343,959
대구	게임,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뉴미디어콘텐츠	남구 대명동(구 계명대 부지)	117,666
대전	첨단영상(영화), 게임	유성구 도룡동(엑스포공원 일부)	338,570
경기 부천	만화, 애니메이션	원미구 상동(영상문화단지 일원)	600,263
전북 전주	한스타일, 영상	완산구 (정보영상벤처타운,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일원)	472,138
충남 천안	문화디자인	문화동·대흥동, 성황동, 오룡동, 원성동 일원(천안역 인근)	306,782
제주	디지털영상, 모바일콘텐츠	이도2동(제주시청 인근)	127,657
인천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남구 도화동 일원	263,164
경기 고양	방송영상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장항동 일원 오피스집적지구	664,710
경기 성남	게임산업 및 IPTV산업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	1,246,826
경북 안동	영상, 공예, 공연/전시산업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512,581

지자체명	의견 주요내용										
전북도	-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2025년 문체부 업무보고 및 문화한국 2035 포함) 등 K-컬처 복합거점지구 조성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한류 산업의 발전 도모하기 위해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투자가 용이한 새만금사업지역이 포함되어야 함 - 새만금사업지역은 각종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조세감면, 외국인투자 여건개선 등이 경제자유구역보다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되는 지역임 - 국토 균형발전 및 개정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융합특구 및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도에 대한 지역 안배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고(2008. 5. 6 지정→2018. 4. 22 해제), 새만금특별법으로 관리가 일원화됨 ※ 도심융합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정 현황</th></tr> </thead> <tbody> <tr> <td>도심융합특구 (5개 광역시)</td><td>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td></tr> <tr> <td>경제자유구역 (8개)</td><td>인천, 경기, 광주, 충북,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대구경북</td></tr> </tbody> </table> - 새만금사업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새만금사업지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융복합 산업단지, 스마트그린 산업단, 재생에너지 및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등이 집중되고 있는 전략지역이며, 콘텐츠 산업 실증과 창작 공간 집적지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대규모 유희공간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XR체험형 복합시설 유치, 글로벌 콘텐츠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등 K-컬처 복합거점 조성 목적과 부합하는 특수지역으로, 실질적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개 정 안</th><th>전북도 수정안</th></tr> </thead> <tbody> <tr> <td>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td><td>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td></tr> </tbody> </table>	구분	지정 현황	도심융합특구 (5개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경제자유구역 (8개)	인천, 경기, 광주, 충북,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대구경북	개 정 안	전북도 수정안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
구분	지정 현황										
도심융합특구 (5개 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경제자유구역 (8개)	인천, 경기, 광주, 충북,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대구경북										
개 정 안	전북도 수정안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24 255 906 990">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4. (생략) ②~③ (생략) </td><td data-bbox="906 255 1385 990"> 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③ (생략) . </td></tr> </table> * 관련 법 목적 (새만금사업법)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경제자유구역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4. (생략) ②~③ (생략)	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③ (생략) .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4. (생략) ②~③ (생략)	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u>「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③ (생략) .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 K-컬처 복합거점지구 지정 시 한식 관련 농식품부와 미리 협의할 필요 ○ 개정안에는 “K-컬처”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나, 한국문화에서 우리의 식문화와 한식은 중요 * (제안 취지) K-콘텐츠 활성화 지원이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 →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 조성하여 종합적 지원 체계 마련 ○ 개정법안과 「한식진흥법」 및 관련 사업의 중복·상충 발생 가능성 -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사업으로 K-미식벨트 조성*,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추진 중 * K-미식벨트 조성 (목적) 특색 있는 음식관광 테마 발굴, 관광상품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고용 창출, K-푸드 수출 활성화 지원 (내용) 한식관광상품 프로그램 기획고도화 수요자 대상 홍보 및 판매, 미식 해설사 신규 양성 및 보수 교육, 총괄 자문단 운영 (현황) 기 구축 벨트 4개(장, 전통주, 김치, 인삼), '32년까지 30개소 설치 목표 **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목적)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을 통한 한식원형 연구, 향토음식 자원화 및 고유성 보존 등 향토음식 기반 전후방 산업 육성 (내용) 향토음식진흥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반영하여 최적의 전시·교육·체험 공간 조성 및 구축 (현황) 전남 목포, 3년간(24:실시설계, 25:부지매입, 건축공사, 26:건축공사) 105억원 (유사 입법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당시 정부 내 합의 반영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개 정 안</th><th>전북도 수정안</th></tr> </thead> <tbody> <tr> <td>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td><td>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td></tr> </tbody> </table>	개 정 안	전북도 수정안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
개 정 안	전북도 수정안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제31조의2(K-컬처 복합거점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 -----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콘텐츠기업 집중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K-컬처 복합거점지구(이하 “K-컬처거점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4. (생략) ②~③ (생략)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③ (생략)
--	---